

세종문화회관 무대 안전관리 방염 처리 안내문

(재)세종문화회관을 이용하시는 고객 여러분의 안전과 원활한 공연진행을 위하여, 아래의 『무대세트 방염처리 안내』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무대세트 방염처리 안내 -

1. 소방시설법상 / 방염대상 품목

(재)세종문화회관은 대관규정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32조에 근거하여 공연장에 반입되는 무대 세트(바닥마감 포함)는 반드시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선처리 품목으로 제작되어야 하며, 대관자는 반입품에 대한 방염목록서(첨부1)와 함께 선처리 품목에 대한 방염 성능 결과통보서를 반입 전일까지 안전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합판 및 목재류에 한해 설치현장에서 방염처리가 필요한 경우(절단, 가공, 타공, 작화 등)에는 선처리·일반품목 모두 사용 가능하나, 반드시 현장 방염처리 작업(방염 처리업 면허자격증 소지자가 작업) 및 관할(종로)소방서에 접수 후, 발급받은 방염성능 검사 접수증과 현장처리 물품의 방염성능 성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소방시설법"이라 한다.)

제20조(특정 소방대상물의 방염 등) / 제21조(방염 성능의 검사)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방염대상물품 및 방염성능기준) / 제32조(시·도지사가 실시하는 방염성능검사)

1) 방염성능검사 결과 통보서:

선처리 방염품목(제조 및 가공 과정에서 방염처리된 물품)에 대한 방염 성적서로 소방청 산하 방염검사 기관인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에서 방염성능검사를 진행하여 발급받은 방염성적서

2) 현장처리물품의 방염성능 성적서:

현장처리 방염품목(설치현장에서 방염처리하는 물품)으로 시·도지사의 권한을 위임받은 관할 소방서에서 방염성능검사를 진행하여 발급 받은 방염성적서

2. 소방시설법상 / 방염대상품목에 명시되지 않은 품목

세트의 소재 특성상 소방시설법 선처리 방염대상 품목에 포함되지 않는 품목 또는 현장 방염처리가 불가능한 품목을 부득이 사용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회관 안전관리자와 협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한국 소방산업기술원(KFI) 또는 관할소방서의 방염성적서 발급이 불가함으로, 아래의 사항을 확인하시어 필요서류를 반입 전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① 난연 또는 불연재 소재는 확인 서류(난연 또는 불연 성능) 제출시 반입 및 설치가 가능합니다.
 - ② 난연 또는 불연 소재가 아닌 경우에는 **작업확인서 및 작업사진서(첨부2)**를 작성하시고 국내 방염시험 인증 기관(KFPI, KCL, TIPI, ... 등)에 검사 접수 및 발급받은 **후처리 방염성능 시험 의뢰성적서³⁾**를 함께 제출시 반입 및 설치가 가능합니다.(단, 유효기간: 반입일 기준 1년 이내)
 - ③ 방염성적서 또는 난연·불연재 소재 확인 서류가 없는 품목은 무대 반입 및 사용을 금지 합니다.
-

3) 후처리 방염성능 의뢰 시험성적서:

소방시설법상 방염대상품목에 명시되지 않은 품목에 대해 후처리 방염작업후 국내 방염 인증기관에서 시험 의뢰를 하여 제출받은 의뢰 시험성적서(단, 의뢰 시험성적서는 세트 전수가 아닌 제출한 시료 샘플에 대한 방염성능 성적서로 소방설비완비 증명용으로는 사용될 수 없음)

※ 첨부 (방염 관련 준비 서류.zip)

1. 방염 목록서 양식
2. 방염처리(후방염) 작업확인서 및 방염작업 사진 양식
3. 방염성능기준(소방청고시 제2022-29호)

첨부2. 방염처리 작업확인서 및 방염작업 사진

방염처리(후방염) 작업 확인서			
공 연 명	뮤지컬 000000		
작업정보	작업장소 : 00무대제작소내 000, 작업일자 : 2024년 00월00일 00		
작업업체정보	업체명 : 00무대제작소 연락처 : 00-0000-0000	방염업체정보	업체명 : 0000 방염 연락처 : 00-0000-0000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div style="width: 30%;"> <p>세부품목 작업사항</p> </div> <div style="width: 65%;"> <p>무대세트류 품목(재질) 및 수량(크기)</p> <hr/> <p>기타 품목 및 수량</p> </div> </div>		
<p>※ 소방시설법상 방염성능검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품목에 대한 작업 확인서임. (단, 후처리 방염품목에 대한 방염성능 시험 의뢰 성적서의 유효기간은 반입일 기준 1년 이내 입니다.)</p> <p>※ 첨부 : 품목별 작업사진 첨부 (작업용 방염액 제품사진도 추가첨부)</p> <p>※ 문의사항 : 책임안전관리자 (02-399-1711)</p>			

방염처리 작업사진 예시

(아래 사진은 예시를 돕기위한 참고용입니다)



방염성능기준

[시행 2022. 12. 1.] [소방청고시 제2022-29호, 2022. 12. 1. 타법개정]

소방청(소방산업과), 044-205-7512

제3조(방염성능검사의 대상) 방염성능검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카펫 : 마루 또는 바닥등에 까는 두꺼운 섬유제품을 말하며 직물카펫, 터프트카펫, 자수카펫, 니트카펫, 접착카펫, 니들핀지카펫 등을 말한다.
2. 커튼 : 실내장식 또는 구획을 위하여 창문 등에 치는 천을 말한다.
3. 블라인드 : 햇빛을 가리기 위해 실내 창에 설치하는 천이나 목재 슬랫 등을 말한다.
가. 포제 블라인드 : 합성수지 등을 주 원료로 하는 천을 말하며 버티칼, 롤 스크린 등을 포함한다.
나. 목재 블라인드 : 목재를 주 원료로 하는 슬랫을 말한다.
4. 암막 : 빛을 막기 위하여 창문등에 치는 천을 말한다.
5. 무대막 : 무대에 설치하는 천을 말하며 스크린을 포함한다.
6. 벽지류 : 두께가 2 mm 미만인 포지로서 벽, 천장 또는 반자 등에 부착하는 것을 말한다.
가. 비닐벽지 : 합성수지를 주원료로 한 벽지를 말한다.
나. 벽포지 : 섬유류를 주원료로 한 벽지를 말하며 부직포로 제조된 벽지를 포함한다.
다. 인테리어필름 : 합성수지에 점착 가공하여 제조된 벽지를 말한다.
라. 천연재료벽지 : 천연재료(필프, 식물등)를 주원료로 한 벽지를 말한다.
7. 합판 : 나무 등을 가공하여 제조된 판을 말하며, 중밀도섬유판(MDF), 목재판넬(HDF), 파티클보드(PB)를 포함한다. 이 경우 방염처리 및 장식을 위하여 표면에 0.4 mm 이하인 시트를 부착한 것도 합판으로 본다.
8. 목재 : 나무를 재료로 하여 제조된 물품을 말한다.
9. 섬유판 : 합성수지판 또는 합판 등에 섬유류를 부착하거나 섬유류로 제조된 것을 말하며 섬유류로 제조된 흡음재 및 방음재를 포함한다.
10. 합성수지판 : 합성수지를 주원료로 하여 제조된 실내장식물을 말하며 합성수지로 제조된 흡음재 및 방음재를 포함한다.
11. 합성수지 시트 : 합성수지로 제조된 포지를 말한다.
12. 소파·의자 : 섬유류 또는 합성수지류 등을 소재로 제작된 물품을 말한다.
13. 기타물품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실내장식물로서 제1호 내지 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물품을 말한다.

부칙 <제2022-29호,2022,12,1.>

이 고시는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